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머리말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일명 'CRPD')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차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의학적 치료는 자발적 동의에 기반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협약 실현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권리기반 정신건강서비스 툴킷(QualityRights Tool kit)을 마련하였고, 2019년 권리기반 정신건강서비스 훈련·지침·실행을 위한 자료집(QualityRights Materials for Training, Guidance and Transformation), 2021년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 지침(Guidance and Technical Packages 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을 보급하는 등 전 세계의 정신건강 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복지향서비스에 방향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가치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기본이념에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반영하였고, 입원 절차 등 법령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비자의 입원율은 낮아졌지만 자의·동의입원에서 입원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격리 및 강박과 이 과정에서 동반되는 물리적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면회·외출 제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정신의료기관의 부족한 인력, 물리적 환경, 법·제도에 원인이 있기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성장에 따라 국민들의 삶과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인권감수성이 풍부해지는데 반해, 정신의료기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기존의 운영방식과 관행을 유지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컴퓨터만큼 휴대전화를 보편적이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정책은 여전히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종사자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반복되는 진정사건과 그 결정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보기 위해 <인권침해 예방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방 안내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반복되는 진정사건을 유형화 하였으며, 위원회 결정문 원문에서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그리고 결정취지의 핵심내용만을 축약하였습니다.

이번 <인권침해 예방 안내서>가 정신의료기관의 모든 의료진과 종사자분들이 정신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인권에 기반한 정신건강서비스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랍니다.

2022. 12. 29.

국가인권위원회

목 차

CONTENT

I

입 · 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 자의입원 거부 후 행정입원	2
2. 의사표현이 어려운 환자의 자의 · 동의입원	3
3. 대리서명에 의한 보호입원	4
4. 보호의무자 1인에 의한 입원신청	5
5. 응급입원 사실 미통지	6
6. 권리행사 서류 비치 및 제공 의무 위반	7

II

격리 · 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1. 1인 병실 이용 목적의 격리실 출입제한	10
2. 징벌 목적의 격리행위	11
3. 낙상 방지를 이유로 한 격리 및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제한	12
4. 전문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강박	14
5. 행동수정을 이유로 한 강박	15
6. 치료 비협조를 이유로 한 강박	17
7.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에 대한 강박	18
8.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강박	19

III

폭행 등의 인권침해

1. 강박과정에서 폭력행위	22
2. 과도한 물리력 행사	23

IV

노동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1. 병실 청소 · 배식 등 노동 강요	26
2. 작업치료에 부합하지 아니한 노동 강요	28
3. 사적노동 강요	29

V 사생활 자유의 침해

1. 화장실 잠금장치 미설치	32
2. 본인 동의 없는 CCTV 촬영	33
3. 일률적인 소지품 검사	34
4. 동의 없는 병동이전과 개인 사물 정리	35

VI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1. 보호자 요구에 의한 통신 제한	38
2. 공중전화 긴급버튼 차단	39
3. 휴대전화의 일률적 제한	41
4. 면회 및 외부물품 제한	43

VII 인격권 침해

1. 비위생적·비인격적 격리실 환경	46
2. 격리실 내 휴대용(간이) 변기	48
3. 격리실 내 기저귀 착용	49

VIII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보장

1. 진정서 미발송	52
2. 진정서 분실·폐기	53
3. 진정서 및 진정함 관리 소홀	54

I

입·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 자의입원 거부 후 행정입원 ————— 2
2. 의사표현이 어려운 환자의 자의 · 동의입원 ——— 3
3. 대리서명에 의한 보호입원 ————— 4
4. 보호의무자 1인에 의한 입원신청 ————— 5
5. 응급입원 사실 미통지 ————— 6
6. 권리행사 서류 비치 및 제공 의무 위반 ————— 7

자의입원 거부 후 행정입원

정신병원의 자의입원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21진정0781100·21진정0799300(병합))
(2022. 6. 2. 결정)

진정요지 알코올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자의입원을 하려고 했지만, 정신병원에서 자의입원을 할 수 없다며 행정입원을 시켜서 퇴원을 하고 싶어도 퇴원을 할 수가 없다.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이 이전에 퇴원하였을 때 발생했던 문제적 음주와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 등으로 환자 건강이 매우 악화되고 증상과 관련한 위험성이 높았으며, 퇴원 후 연락이 두절되어서 진정인의 치료를 위해 행정입원으로 진행하였다.

판단 요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자의입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의 의견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환자 치료의 계속성 및 환자를 위한 목적일지라도 입원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환자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행정입원으로 조치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 ✓ 자의입원을 원하는 환자를 행정입원 등 비자의입원으로의 조치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자의입원을 권장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특히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은 환자 스스로가 단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격리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환자에게 심어줄 경우 앞으로의 자발적 입원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의 취지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어서 진단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치료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경찰관에게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필요한 진단과 보호를 조치하게 하기 위함이다.
- ✓ 자의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자기의사에 의해 퇴원이 불허되는 등 신체의 자유가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입원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여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사 결정례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거부 및 진정서 발송 지연
(20진정0073200)(2020. 5. 14. 결정)

의사표현이 어려운 환자의 자의·동의입원

중증지적장애인 정신의료기관 입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21진정0072700)
(2021. 6. 21. 결정)

진정요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퇴원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피해자의 부친인 진정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의 입원을 유지시켰다.

피진정인 주장 입원기간 동안 피해자가 퇴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정식으로 퇴원을 요청한 적 없어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퇴원의사를 전달할 이유가 없었다.

판단 요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동의입원은 환자가 스스로 질병을 인지하고 치료를 위한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환자가 입원을 신청해야 한다. 입원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중증지적장애인을 설득하여 동의입원 하도록 유도하고, 퇴원의사를 무시한 채 임의로 입원상태를 유지시킨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동의입원) 취지와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 ☑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과 관련해서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퇴원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역시 입원신청서 외 퇴원신청서는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형태가 되었건 동의입원한 환자가 정신의료기관장에게 퇴원의사를 밝혔다면 계속입원을 해야 할 의학적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는 것이다.
- ☑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동의입원등)은 환자가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인지하고 치료하기 위한 자발적 치료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동의입원은 임상적·심리사회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 ☑ 그런데 피진정인은 자발적 입원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설득하여 동의입원 하도록 유도하고, 퇴원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임의로 입원상태를 유지시켰다.

유사 결정례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동의입원 등(20진정0831500)(2021. 4. 6. 결정), 정신병원의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격리 등(18진정0671400)(2019. 12. 23. 결정)

대리서명에 의한 보호입원

부당한 입원(17진정0512300)(2017. 12. 26. 결정)

진정요지 진정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인데, 입원 당시 보호자인 어머니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의 처가 어머니를 대신해 보호자에 의한 입원을 시켰다.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계속 입·퇴원을 해온 환자로 입원 당시 어머니의 동의도 곧 받으리라 생각하고 입원조치를 한 것이다. 병원 측의 실수가 있었음을 최근에야 확인하였다.

판단 요지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의무자가 가정폭력의 급박함을 호소한다는 사유로 다른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 서류에 대필하게 하여 입원조치 하게 한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 ☑️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입원을 시킬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외에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등의 입원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해당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그러나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인 어머니의 입원동의서 등을 받지 않고 진정인의 처로 하여금 필요 서류에 대필하게 하여 진정인을 입원조치 하였는바,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 ☑️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하였던 환자이고, 음주로 인해 참고인 및 딸을 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나 만약 **진정인이 음주 후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상황이었다면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피진정인들 주장의 사유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보호의무자 1인에 의한 입원신청

부당한 강제입원(19진정0234400)(2019. 7. 5. 결정)

진정요지 정신병원에 보호입원 되었는데, 다음 날 수령한 권리고지서에 어머니 1인의 서명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입원 당시 진정인은 어머니, 남동생과 동행하였고 부모님이 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다고 하여 진정인의 아버지에게 입원 사실을 알렸다. 진정인의 아버지는 주말에 바쁜 일이 있다며 며칠 후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진정인과 면회하였다.

판단 요지 보호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 1인만이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 받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행위이며, 입원 과정에서 위법성을 지적하며 즉시 퇴원을 요구하는 진정인의 요청을 거부한 행위도 위법한 행위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 ☑ 환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입원의 하나인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하므로 그 과정에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남용가능성을 방지하며,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자 2014헌가9 결정 참조).
- ☑ 이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진단이 있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킬 경우에는 입원 결정 이전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도록 관련 절차를 명문화 하고 있다.
- ☑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응급입원 사실 미통지

부당한 행정입원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21진정0781500·22진정0236700(병합))
(2022. 4. 28. 결정)

진정요지 직계가족인 모친과 가족이 있음에도 □□병원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정입원된 것은 부당하다.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 응급입원 시 담당 경찰관에게 진정인의 가족으로 언니가 있으나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전달받았고, 어머니 등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전달받지 못했다. 또한 진정인으로부터 보호의무자 여부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

판단 요지 정신의료기관장이 응급입원환자의 보호의무자 등에게 환자의 응급입원 사실을 서면통지하지 않고 계속 행정입원을 유지시킨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6항과 제51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자기정보결정권과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이다.

- ✓ 진정인의 ‘응급입원 의뢰서’, 입원 당일인 20××. ××. ××. 주치의의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도 진정인 언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진정인의 언니를 통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어머니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설령, 진정인, 진정인의 언니 또는 응급입원 담당 경찰관 등을 통해 보호의무자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정신건강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확인을 요청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어야 했다.
- ✓ 응급입원 시 보호의무자 등에 대한 서면통지 규정과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요청 규정은 계속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에 따른 인신구속적 성격의 행정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응급입원환자의 경우 가족의 조력이 시급한 경우가 많은 점, 행정입원 전 동의입원이나 보호입원으로의 조치 가능성 등을 고려한 인권보호 절차로 볼 수 있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상정보 확인이나 조회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 제6호에 따라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권리행사 서류 비치 및 제공 의무 위반

퇴원심사청구서 및 절차조력인 미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21진정0992700)(2022. 4. 28. 결정)

진정요지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피진정인들에게 퇴원심사청구서를 요구하였으나 제공받지 못했다.

피진정인 주장 병동에 퇴원심사청구서 및 인신구제청구서 등을 비치해 놓을 경우 환자들이 종이접기를 하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여 요청한 환자에 한해서만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가 퇴원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퇴원심사청구서를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당시 피해자가 퇴원하고 싶다가에 주치의에게 말해보겠다고 했고, 퇴원하고 싶은 내용을 메모지에 쓰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하였다.

판단 요지 지적장애가 있는 입원환자의 퇴원의사를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퇴원심사청구 및 인신구제청구의 권리 등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서식을 병동 내 상시 구비해 놓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사실상 제한한 행위이다.

- ☑ 퇴원심사청구서와 같은 서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퇴원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사건 피해자 및 참고인과 같이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각종 권리 정보를 스스로 취합하기 어려운 사람은 조력자가 없다면 그러한 권리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렵다.
- ☑ 그러한 이유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원환자에 대해 이 법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서면으로 알려면서 구두로도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부 접근성이 제한된 폐쇄병동 입원환자가 정보접근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피해자의 입원연장심사 청구 시 피해자의 의견을 □□시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전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퇴원의사를 밝힌 메모를 적어 피진정인을 통해 주치의에게 전달한 사실을 포함하여 수시로 퇴원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은 요구에도 피진정인과 주치의가 피해자에게 퇴원심사청구 및 인신구제청구의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점, 퇴원심사청구에 관한 서식을 입원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진정인의 부작위로 인해 적정절차에 따라 인신구제를 청구할 피해자의 권리가 일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I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1. 1인 병실 이용 목적의 격리실 출입제한 ——— 10
2. 징벌 목적의 격리행위 ——— 11
3. 낙상 방지를 이유로 한 격리 및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제한 ——— 12
4. 전문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강박 ——— 14
5. 행동수정을 이유로 한 강박 ——— 15
6. 치료 비협조를 이유로 한 강박 ——— 17
7.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에 대한 강박 ——— 18
8.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강박 ——— 19

1인 병실 이용 목적의 격리실 출입제한

부당한 격리와 통신제한 등 인권침해(17진정0734600)(2018. 5. 4. 결정)

진정요지 입원 당시 탈의하라는 사전 설명 없이 격리실에 가두었고 이후에도 독방생활을 하게 하여 불안에 떨었다.

피진정인 주장 피해자가 피해망상증세로 밖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욕하는 것 같으며 보호실에 있겠다고 한 것이었다.

판단 요지 환자의 선택에 따라 격리실에서 취침하도록 하였더라도 문을 열 수 없는 상태에 둔 것은 격리행위에 해당하며, 격리 및 강박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2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 침해행위이다.

- ✓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보호실로 들어갔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사실로 판단되지만 피해자가 취침 시 다인실이 아닌 보호실을 선택한 것은 1인실이 없는 병동의 환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호실에서 취침을 하려 했던 것이지 스스로 출입이 제한되는 격리를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 보호실의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기고 안에서는 열 수 없다는 점과 출입문을 열어 줄 때마다 병동 종사자들이 짜증을 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보호실 출입이 자유로웠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보호실에서 취침을 하도록 하였다면 출입이 자유롭도록 자동문의 잠금 기능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고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는 상태에 둔 것은 격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격리조치를 시행하면서 인정사실과 같이 일부 조치만 간호기록에 기재하였을 뿐 주치의나 당직의사의 지시는 없었으며, 격리 및 강박일지 작성도 하지 않았다. 또한 격리 시행 전후 그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나 가족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유사 결정례 정신병원에서의 부당한 처우(18진정0659700)(2019. 4. 15. 결정)

징벌 목적의 격리행위

물건을 훔친 이유로 인한 부당한 격리(21진정0082400)(2021. 5. 17. 결정)

진정요지 피해자는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인데, 피해자에게 도둑질 한 것을 인정하면 격리를 해제해주겠다고 부당하게 격리시켰다.

피진정인 주장 피해자는 평소 다른 환자들의 물건(특히 담배)을 자주 훔치는 환자이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어 전체적인 병원 운영 관리를 위해 피해자가 훔친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격리 시행일지에서 5분 간격을 두고 재격리를 시행한 것은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계속 격리가 필요한 상태이냐, 다학제평가팀을 운영하기 어려워 격리를 잠시 해제했다가 다시 입실한 것이며,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다시 격리가 된 것은 추가 절도가 발생한 것이다.

판단 요지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입원환자를 격리한 행위는 치료 또는 보호목적의 격리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 ☑ 피해자가 담배를 훔친 행동이 발각되었을 당시 욕설, 고성, 폭력성이 나타나 자타해 위험성으로 인해 치료 및 보호를 목적으로 격리 될 수 있었으나, 인정사실에서 보듯 격리 이후에는 특이 호소 및 행동 없이 안정을 취하거나 수면 중으로 기록되어 있고, 피해자 본인 및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 ☑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훔친 것을 인지하고 앞으로 훔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야 격리를 해제해주겠다고 격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를 장기간 격리 조치하였다. 또한 다학제평가팀을 여건상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속 최대 격리 시간인 24시간 직전에 격리를 해제하였다가 5분 만에 다시 피해자가 담배를 훔쳐 격리 조치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하였다.
- ☑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 최소화 노력에 소홀한 조치로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피해자가 담배를 훔치는 행동 수정이 목적이라면, 피해자와 보호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에 대한 행동 수정 계획을 설정하고 규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낙상 방지를 이유로 한 격리 및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제한

정신병원 과도한 격리 및 편의제공 미흡 등(18진정0863200)(2020. 2. 19. 결정)

진정요지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열흘간 격리실에 감금하였고,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보조지팡이(목발)를 사용하였는데 목발사용을 제한하고,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은 입실 초기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전신 쇠약 및 불안정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으나, 며칠 후 거동이 어렵고 낙상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관찰 기간 중 2회 정도 벽에 머리를 부딪친 적이 있고 반복적으로 넘어져서 일반 병실로 보낼 수가 없었다. 진정인이 평소 사용하였다는 목발은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용을 제한하고, 대신 휠체어를 제공하였다.

판단 요지 자·타해 위험성이 없는 진정인에 대하여 9일간 격리하고 목발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및 격리 및 강박지침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을 방해한 장애인 차별 행위이다

- ✓ 진정인은 20××. ×. ×. ~ ×. ×. (9일간)까지 주치의 지시에 따라 격리되었다. 진정인이 격리실에 있는 동안 낙상 위험 외에 수면 및 식사 상태가 양호하며 안정적으로 치료에 협조적인 모습이었다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자·타해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아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격리실에 잠금장치를 하여 9일 동안이나 격리한 것은 과도하였다고 보인다.
- ✓ 또한, 진정인에 대해 피진정인의 타 병원 전원 요청이나 병동 입원 시에 낙상 우려에 따른 간병 지원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 병실 배정이 지연될 수도 있겠으나, 이와 같은 사정으로 9일 동안의 격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 시 목발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주치의는 자해·타해 위험성이 있어 목발 사용을 제한하고, 진정인의 이동을 위해 목발의 대체 수단으로 휠체어를 제공하고 보호자로부터 보조기구 위커를 전달받아 진정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진정인은 입원기간 중 격리실에서 낙상 위험 기록 외에 자해·타해 위험 및 행동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장애인보조기구(목발)의 사용을 제한한 목적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 ✓ 또한, 피진정병원은 목발의 대체 수단으로 진정인에게 휠체어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그 휠체어는 200여명의 환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병원에 한 대 뿐인 휠체어였기 때문에, 다리 부상을 입은 환자가 발생하자 진정인이 사용하던 휠체어를 그 환자에게

제공하였다. 결국 진정인은 입원 기간 동안 목발 사용을 제한당한 채 휠체어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자비로 휠체어를 구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200여명의 환자 중 보행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피진정인은 **휠체어 등 편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않아 진정인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휠체어 사용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진정인이 휠체어 구비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거나 휠체어 구매 비용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피진정인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강박

정신병원의 부당한 격리 및 강박 등(20진정0867100)(2021. 6. 21. 결정)

진정요지 입원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 날 손목에 수포가 잡히고 껍질이 벗겨지는 등 상해를 당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은 입원 이후 3일간 금단 섬망 상태로 기분장애, 충동적 행동의 위험성이 커서 1주 이상 안정실에서 치료목적으로 격리되었는데, 격리 중 수액 주사 처치 시 환자가 주사를 거부하는 등 협조가 되지 않아서 주치의 지시 없이 환자의 양 손목을 강박한 후 주사를 놓고 있는데 진정인이 몸을 계속 움직였다. 해제 당시 손목부위 살갗이 벗겨지고 수포가 생기고 부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고, 다음날 동료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상태에 대해 구두로 인수인계하였다.

판단 요지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사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 없이 주사제 처방 편의를 위해 강박을 시행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를 위반한 행위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 ✓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액 또는 주사제를 맞는 과정에서 협조가 되지 않아 진정인의 안전을 위하여 강박 하였다고 주장하나, 치료 또는 보호 목적의 격리·강박의 경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하였다면 격리·강박 기록지에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격리 강박이 필요한 이유), 병명, 개시 및 종료 시간(시행일시, 해제일시),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1조) 하여야 한다.
- ✓ 따라서 이 사건 진정에서 간호사인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 없이 주사제 처방의 편의를 위해 강박을 시행하고 이를 기록조차 하지 않은 행위는 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정신의료기관에서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은 환자들의 기본적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커서 그 요건과 필요성을 법률에 엄격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간호사들이 자의적으로 환자들을 강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 나아가 같은 병원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무분별한 강박이 병원의 오랜 관행으로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직원들이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환자를 강박하는 관행의 개선이 요구된다.

행동수정을 이유로 한 강박

정신병원에서의 외부물품 지급 및 면회제한 등(18진정0403700, 0407800(병합))
(2019. 12. 4. 결정)

진정요지 주치의가 일반적으로 작성한 행동수정 약속에 서명을 강요하고, 이내 병실 벽에 붙여서 찢어버린 적이 있다. 약속에는 ‘동료 환자들이 주는 간식 먹지 말기’ 등이 있었는데 강제로 약속한 결정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 격리·강박 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평소 진정인은 연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요구, 다른 환자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소리를 지르고, 아무데서나 옷 벗기 등의 급성기 증상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행동조절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진정인의 동의하에 행동요법을 설정하고 치료를 진행하였고, 진정인이 행동수정계획 설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판단 요지 행동수정계획 위반 및 자해공격적 행동을 이유로 과도하게 격리 및 사지강박을 시행하고 일부 격리·강박일지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 ☑ 이 사건에서 주치의는 진정인의 입원기간(20××. 4. 7. ~ 6. 26.)동안 치료를 목적으로 총 4회의 행동수정을 설정하였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총 16회의 격리 및 사지강박을 시행하였다.
- ☑ 주치의는 진정인이 행동수정계획을 어길 경우,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것이라고 진정인에게 설명하였고 진정인은 이를 동의하여 행동수정계획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피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행동수정계획서 동의서)는 없다. 이에 진정인이 행동수정계획 내용에 동의하여 행동수정계획이 설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행동수정계획 내용 중 “소리를 지르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기,” “아무데서나 옷을 벗지 않기,” “다른 사람과의 물건 공유하지 않기,” “일일 전화 사용 3회,” “일일 간식 ○○파이 3개”로 제한하는 것은 진정인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진에게 무리한 요구 또는 같은 요구를 2번 이상 하지 않기”를 어길 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 것은 치료진의 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신체적 제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원기간 중 총 2회의 안정실 입실에 관한 구체적인 격리 기록이

없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기록보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 ☑️ 진정인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1항 규정에 따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시행한 사유에 대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 신체적 제한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격리·강박일지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입원기간(총 81일) 동안 행동수정계획 위반 및 자해·공격적 행동을 이유로 총 18회의 격리 및 사지강박, 총 4회의 격리를 시행한 것은 약 4일에 한 번씩 격리나 강박을 한 것으로 과도해 보인다.

치료 비협조를 이유로 한 강박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박 등 인권침해(19진정0573800)(2019. 12. 4. 결정)

진정요지 “교도수도 안하는 신체검사를 왜 시키느냐”고 항의하였다가 4명의 보호사에 의해 강박되었다.

피진정인 주장 환복 후 술을 깨기 위해 수액이 들어갈 것을 설명하였지만, 침대에 누워서 수액을 거부하고, “당장 퇴원시키지 않으면 고소할 테니 멋대로 한번 해봐”하며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아서 흥분 등을 줄여줄 필요가 있어서 주치의 보고 후 격리 및 강박을 실시하였다.

판단 요지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욕설과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언어적인 위협만으로 환자의 신체를 제한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및 격리 및 강박 지침의 기준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행위이다.

- ☑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주치의와의 대면 이후 병동에서부터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공격적이고 강박적인 언행을 보여 흥분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단지 욕설과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언어적인 위협만으로 타해 위험의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
- ☑ 특히,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입원하게 될 경우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고 의료진에게 적대적일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이유로 격리 및 강박을 실시한다면, 환자들의 신체를 과도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 ☑ 이러한 강박이 「형법」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신체를 제한하는 조치를 지시하는 전문의로서 「정신건강복지법」 및 「격리 및 강박 지침」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시할 책임이 큰 만큼,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강박행위는 같은 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에 대한 강박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박 및 CCTV 촬영 등(21진정0192300)(2021. 7. 19. 결정)

진정요지 진정인은 보호입원 되었는데 안정실에 격리되었던 날 소변을 보다가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소란이나 난동, 자·타해 위험이 없었음에도 사지를 강박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은 입원 당시에도 술에 취해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입원 직후 주치의 판단 하에 격리되었는데 그 후 격리실 바닥에 소변을 보는 행동을 반복하여 바닥이 미끄러워졌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까지 진정인의 알코올 섬망 증상이 지속되어 인지기능의 급격한 변화를 보였고 행동 조절의 어려움이 있어 낙상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진정인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강박이 이루어졌다.

판단 요지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를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 절차도 없이 과도하게 강박하고, 강박 후 환자의 상태를 적절하게 관찰 및 평가하지 아니한 행위는 입원환자의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 ☑ 피진정인이 제출한 의료기록에는 사건 당일 취한 상태로 침대 밑으로 내려오는 반복 행동 보이고, 낙상이 우려되어 주치의 보고함. 주치의 오더에 의해 강박 4포인트 시행함' 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은 침대 밑으로 내려오려는 반복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수면 중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데 이후 보호사 3명이 들어와 수면 중인 진정인의 손목을 묶으면서 기저귀를 착용시키고 4포인트 강박을 하였다.
- ☑ 이와 같이 동영상에 녹화된 내용은 피진정인이 제출한 의료기록의 내용과 상반되며 진정인을 강박한 이유가 소란과 난동, 낙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강박한 것이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 ☑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20××. ×. ×. 19:50부터 다음날 03:00까지 8시간 10분 동안 강박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의 2021. 3.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1회 최대시간 기준인 4시간과 강박 연속 최대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사후 다학제평가팀의 회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진정인 제출 자료에서 다학제평가팀 회의 개최 관련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추가로 '격리 시 최소 1시간마다, 강박 시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강박한 이후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지 않았다.

환자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강박

응급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21진정0327800)(2021. 12. 16. 결정)

진정요지 피해자는 양 손목 자해 상처 봉합 수술 후 피진정병원에 입원 되었는데 격리 및 사지 강박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 상처부위를 강박하여 봉합수술 부위가 터지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입원 당일 피해자의 정서가 불안정하고 공격적이어서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격리 및 강박을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양팔에 자해 상처가 있음을 알았지만 피해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강박은 불가피하였다. 강박 후 피해자의 활력 징후 및 상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이를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판단 요지 입원환자가 양쪽 손목을 봉합 처치 후 입원되어 상흔 부위 감염이나 열개의 우려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양쪽 손목과 발목을 강박하여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열개가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보호조치 미흡 행위에 해당한다.

- ☑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서도 진정인의 자·타해 행동은 확인되지 않으며, 격리 및 강박일지에도 자·타해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피해자가 양쪽 손목의 열린 상처에 대한 봉합 처치 후 입원되어 손목을 끈으로 묶는 경우 상흔 부위 감염이나 봉합 부위 열개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손목 부위에 대한 상태 점검이나 고려 없이, 피진정인의 진술 이외에 강박의 필요성과 목적성, 시행의 타당성으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이 없음에도 막연한 자·타해의 위험성을 예단하여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발목을 강박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열개가 발생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III

폭행 등의 인권침해

1. 강박과정에서 폭력행위 ————— 22
2. 과도한 물리력 행사 ————— 23

강박과정에서 폭력행위

보호사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18진정0256300, 18진정0263100, 18진정0339400(병합))(2018. 5. 4. 결정)

진정요지 의료진에게 화를 낸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안정실에 격리되었고, 격리 후 강박과정에서 보호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피해자는 의료진을 향해 의자를 드는 등 폭력적 행동을 보여 자·타해 위험이 있어 의료적 목적으로 안정실에 격리조치 하였는데, 피해자가 약10분간 안정을 취하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침대 철제 프레임으로 안정실 문을 부수기 시작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호사의 왼쪽 손가락을 물어 상해가 발생하였고, 손가락을 심하게 물린 보호사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찼다.

판단 요지 보호사가 오른손으로 환자의 목을 감거나 양쪽 다리를 잡아 바닥에서 끌고 가고, 환자가 안정실 침대에 이미 누워 있는 상태였음에도 순간의 감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제2항 위반행위이다.

- ☑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같은 법 제6조제3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2조제2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은 격리나 강박을 시행할 때, 안전을 위해 적절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를 안정실로 이동시킬 때 보호사 1인이 목을 감거나 양쪽 다리를 잡아 바닥에서 끌고 갔다. 이는 당시 피해자가 **의료진을 공격하는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격리강박의 방법으로서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더욱이 강박과정에서 피해자가 안정실 침대에 이미 누워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진정인2가 순간의 감정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찬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과도한 물리력 행사

정신병원 보호사의 환자에 대한 폭행 등(20진정0449100)(2021. 6. 21. 결정)

진정요지 격리 및 주사제 투여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병원의 보호사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팔을 잡아끌고 벗어나려하면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잡아끌고 다니며 패대기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이 병동라운지에서 공중전화기의 수화기를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을 보호실에 격리하였다. 보호실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이동에 협조하지 않아 환자를 잡아 매트에 앉도록 하였다. 진정인을 매트에 앉히고 보호실 내부를 청소하던 청소원을 도와 물건 등을 정리하는 중에 진정인이 갑자기 피진정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베개로 막아가며 진정인의 팔과 옷깃 등을 잡아 환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다.

판단 요지 입원환자를 보호실로 입실시키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목덜미를 지속적으로 잡거나, 뒤에서 목을 잡아 위에서 눌러 무릎을 꿇어앉히고, 팔을 잡아 돌려 바닥에 쓰러뜨려 제압하는 등의 행위는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지나친 행위로 헌법에 기반한 입원환자의 인권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 ☑️ 보건복지부의 「2020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수록된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 시행 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며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 및 직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의사·간호사)이 포함된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에 서도 2020. 5. 26. 위의 보건복지부 지침과 동일한 내용으로 '안정병동 격리·강박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 ☑️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이 흥분 상태에서 피진정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진정인을 보호실로 입실시키며 진정인의 문제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 피진정인 이외에 개입이 없었고, 보호실에 입실하여 매트리스에 진정인을 앉히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목덜미를 지속적으로 잡거나, 진정인의 공격적인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도 진정인의 뒤에서 목을 잡아 위에서 눌러 무릎을 꿇어앉히고, 팔을 잡아 돌려 바닥에 쓰러뜨려 제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환자인 진정인에 대한 인권의 존중이나 안전을 위한 행동으로 보기에 신체적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하고, 환자인 진정인의

입장에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 ☑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행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IV

노동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1. 병실 청소 · 배식 등 노동 강요 ————— 26
2. 작업치료에 부합하지 아니한 노동 강요 ————— 28
3. 사적노동 강요 ————— 29

병실 청소·배식 등 노동 강요

부당한 노동 부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등(20진정0310500)(2020. 8. 14. 결정)

진정요지 피진정병원은 모든 환자들이 직접 병실 청소를 하여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피진정인 주장 환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각 병실 청소 및 배식을 하는 것으로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별도의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훈련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직업 재활 프로그램의 목적은 퇴원 후 일상생활 적응(자기 관리, 용돈 관리 등)을 돕기 위함이다. 알콜 중독 환자의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 단순·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작업 치료 활동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내 직업 재활프로그램에 재활 훈련자들이 참여하여 여성·노인 병동 외의 모든 공간 청소, 배식 및 세탁을 하고 있다.

판단 요지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청소·배식·세탁을 담당할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직업재활이라고 하면서 노동을 시키고, 직업재활로서 그 내용과 결과 등의 기록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치료와 재활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행위로 입원환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 ☑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 본인의 침대, 물건 등을 정리하는 것은 자기 관리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개인 물품 외 병실 내 공용 공간까지도 병실 환자들이 분담하여 청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총 230여명이 입원하고 있는 피진정병원은 치료진과 행정인력을 제외하고 청소 전담 1명 및 영양사·조리원·조리사 총 10명 이외 별도의 인력 없이 환자들이 직업 재활 훈련을 명목으로 병실 외 병원 내외 모든 청소, 배식, 세탁 일을 하고 있다.
- ☑ 정신의료기관의 청소, 배식, 세탁 업무는 병원 운영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마땅히 피진정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이다.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들에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업재활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 프로그램, 직업재활 훈련실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작업치료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 ☑ 설사 피진정인이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환자의 동의 하에 직업재활 일환으로 시행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 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되어야 하나, 피진정인은 그와 관련한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진정병원의 원내 재활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았다.

- ☑️ 결국 피진정인은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청소·배식·세탁을 담당할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이를 환자들에게 시키고, 직업재활이라고 하면서도 직업재활에 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작업요법의 최상위 단계인 직업재활로서 그 내용과 결과 등의 기록을 하지 않았기에, 환자들의 청소 등의 단순 노동은 치료와 재활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

유사 결정례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에 의한 병실 청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878800)(2021. 6. 21. 결정)

작업치리에 부합하지 아니한 노동 강요

정신병원에서의 부당한 노동부과(20진정0852400)(2021. 11. 3. 결정)

진정요지 병원 직원들이 해야 할 기본 업무인 화장실 청소, 세탁, 음식물분리수거, 설거지, 배식 등의 노동을 입원환자들에게 작업치료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병원은 정신과의 특성상 장기입원이 많고 장기간의 입원생활에 있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무력감 또는 일상생활기능의 저하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 세탁, 음식물분리수거, 설거지 등의 보조역할 등의 작업재활치료요법을 환자들에게 시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치료는 입원환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것으로 입원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

판단 요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부과된 노동이 일부 환자의 동의를 받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명목상 작업치료의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작업내용, 환경, 평가, 전문가 배치 없는 작업치료는 사실상 노동을 강요한 것이다.

✓ 피진정병원의 작업치료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다수의 작업이 병동 내 화장실·복도 등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배식, 식사보조, 식당보조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노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즉, 작업치료가 환자의 치료 및 재활의 목적보다는 인건비 절감 등 피진정병원의 운영 편의를 위하여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둘째, 환자들의 작업 장소는 작업치료를 위한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 및 안전한 환경의 조건을 갖춘 곳이 아닌 병원 직원들의 근무 장소였으며, 작업장소의 현장관리자 또한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가 아닌 보호사 등 병원의 일반 직원들인바, 직업재활을 위한 치료적 진단 및 평가 등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작업치료에 참여하는 환자 대부분이 간식비 등 경제적 궁핍함 때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진술하는바,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자들의 상황과 업무수행능력이 가능한 입원 환자들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피진정병원측의 이익과 결부되어, 작업치료가 환자의 치료 및 재활의 목적보다는 인건비 절감 등 병원 운영을 위해 활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피진정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작업치료는 일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실제 작업치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병원 운영을 위한 단순 노동에 해당한다. 그리고 적절한 시설과 전문인력도 갖추지 않는 등 작업치료에 참여한 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사적노동 강요

정신의료기관 환자에 대한 사적 노동 부과(21진정0589700)(2022. 6. 2. 결정)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와 같은 병원 내 환자이다. 피진정인은 환자 침대에서 편한 자세로 누워 정신질환자인 피해자에게 전신 안마를 강요하였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수개월 전부터 지속되었다.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인은 20××. 3.경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다리에 근육통이 심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안마를 해주겠다고 해서 우연히 안마를 받게 되었다. 처음 시작은 선의였지만, 후에는 피진정인이 부탁하였다. 안마는 환자와 교감이라고 여겼으나 부탁이든 강요든 환자에게 안마를 받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판단 요지 종사자가 환자 침대에서 입원환자에게 안마를 받은 행위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한 행위이다.

- ☑ 피진정인은 처음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안마를 해주겠다고 해서 우연히 안마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약 6개월간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직원과 환자들의 눈을 피해 병실을 이동하면서 환자 침대에서 안마를 받았다. 이는 피해자의 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폐쇄병동 내의 의료진과 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환자들로서는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진정인의 명백한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적 노동행위가 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종사자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피진정인이 환자인 피해자에게 안마 등 사적 노동을 하게 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V

사생활 자유의 침해

1. 화장실 잠금장치 미설치 ————— 32
2. 본인 동의 없는 CCTV 촬영 ————— 33
3. 일률적인 소지품 검사 ————— 34
4. 동의 없는 병동이전과 개인 사물 정리 ————— 35

화장실 잠금장치 미설치

정신병원 화장실의 잠금장치 미설치 등(21진정0594200)(2021. 12. 16. 결정)

진정요지 정신병원의 병동 내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없어 화장실에 들어가면 문을 잡고 용변을 보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살, 자해, 타해, 폭력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화장실 대변기 칸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화장실 문이 바닥에서 약 12cm 높이에 설치되어 화장실 문을 잠그고 사고가 일어날 경우 잘 보이지 않는다.

판단 요지 환자 자타해 등의 사고 발생 예방과 사고 신속 대처를 위한 목적일지라도 밖에서도 문을 열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문을 바닥에서 더 높게 설치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가능하기에 사고 예방을 사유로 화장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는 입원환자의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 ✓ **통상 화장실 공간은 인간의 사생활에서 가장 내밀한 공간임은 이론이 없으며, 비록 정신 의료기관 입원 환자일지라도 그 본질은 동일하다.** 사생활 보장의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인정될 수 있다 해도 화장실 대변기가 있는 공간에 잠금 기능을 전부 없애는 것은 환자의 사생활에 대한 본질적 부분까지도 제약될 수 있다.
- ✓ **피진정인은 화장실 내 대변 칸의 출입문이 바닥으로부터 12c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서 칸 안에서 자해를 시도할 경우 밖에서는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화장실 대변 칸 안에서의 자타해 방지라는 이유로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이라 주장한다.**
- ✓ **하지만 피진정병원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된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대변기 칸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혹은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밖에서 열 수 있는 정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점, 화장실 문 아래쪽에서 화장실 내부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바닥에서 조금 더 높이 설치할 수 있고, 그것이 힘들다면 화장실 대변 칸 밖에서 화장실 대변 칸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화장실 대변기 칸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입원환자가 화장실 대변기를 이용할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고 사생활이 제한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서도 반한다고 판단된다.**

본인 동의 없는 CCTV 촬영

정신의료기관 진료과정에서의 CCTV 촬영에 의한 인권침해(20진정0087500)
(2020. 6. 12. 결정)

진정요지 진정인은 입원하여 심전도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심전도 검사를 받은 곳이 CCTV가 설치되어있는 보호실이라서 검사를 거부하였음에도 보는 사람이 없다며 검사를 강행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실 내에서 심전도 검사를 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원 환자의 신체가 노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모니터 CCTV 가림막 설치 말고도 환자가 보는 앞에서 카메라를 종이(포스트잇)로 붙여 안심시키고 진행하고 있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각 병동과 로비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으나 환자와 보호자에게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있다. 심전도 검사 시 환자들에게 녹화는 되고 있으나 모니터를 가려놓아 볼 수 없음을 고지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일에도 위의 내용을 진정인에게 고지하였으나 남자보호사 등을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판단 요지 CCTV가 설치된 보호실에서 가림막 설치 및 환자에게 동의 절차 없이 심전도 검사를 강제로 실시한 행위는 환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다.

- ☑ 심전도 검사의 경우 진료과정을 촬영하여야 하는 검사가 아니며, 검사당사자인 여성의 상반신이 검사자인 의료인에게 노출되는 순간의 불편함은 치료의 목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검사과정의 불필요한 CCTV 촬영을 통해 보여주고 싶지 않은 탈의한 여성의 상반신 모습이 모니터에 송출되도록 한 행위는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 ☑ 더욱이 진정인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동의절차도 없이 그대로 검사를 진행한 행위와 촬영 장소에서의 심전도 검사를 거부할 경우 CCTV가 없는 다른 장소를 섭외하거나, CCTV에 해당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파티션 등 가림막 설치 등의 대안도 없이 강제하여 실시한 행위는, 검사나 치료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환자가 동의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일률적인 소지품 검사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소지품 검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21진정0967700)(2022. 4. 28. 결정)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병실에서 소지품 검사를 이유로 진정인의 일기 및 편지들을 읽었다.

피진정인 주장 정신의학과 보호병동에서는 자·타해의 우려가 큰 환자들이 있어서 환자들의 저녁 식사시간 즈음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관리지침」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행을 하는데 환자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서 공책도 검사하고 있다.

판단 요지 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사물함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지침상 위해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편지나 공책 등을 검사하는 행위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 ☑️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다수의 정신질환자가 그 기관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 사물함은 환자가 공동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사적 영역으로 사생활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병원의 안전 관리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해물품 반입 여부 등에 대해 사물함 검사를 하는 행위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과도한 검사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 ☑️ 따라서 피진정병원이 사물함 검사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공지한다고 할지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증상, 의료적인 필요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사물함 검사를 실시하는 것, 관리지침 상 위해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편지나 공책 등을 검사하는 행위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등 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동의 없는 병동이전과 개인 사물 정리

입원환자의 동의 없는 병실이전 등에 의한 인권침해(20진정0094500)(2020. 6. 12. 결정)

진정요지 진정인은 알콜의존증으로 피진정병원에 자의로 입원하였다. 다른 환자와 다툼 후 오전에 외출하였다가 오후에 귀원하니 진정인의 동의도 없이 입원병동이 개방병동에서 폐쇄병동으로 이전되어 있었고, 진정인의 개인 사물도 옮겨져 있었다.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주위 환자들에게 자주 화를 내어 환자들과의 갈등이 반복되었고, 진정사건 발생일 경 병동 분위기를 무섭게 하여 개방병동의 수간호사가 진정인에게 3층으로 병동을 이전할 것을 권유하니 어느 정도 수긍한 상태였다가 반복하여 “다른 병동으로 이전하기 싫다”는 등의 어정쩡한 의사를 표시하고 외출한 상태였다. 진정인이 귀원 후 병동이전을 추진하게 되면 다시 타 환자와의 갈등과 후사라도 발생할지 모를 진정인의 폭력행동을 우려하여, 진정인의 외출기간 동안 수간호사가 진정인의 집을 폐쇄병동으로 옮겼다.

판단 요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가 외출한 사이에 임의로 병실을 개방병동에서 폐쇄병동으로 이전하고, 입원실 사물함의 개인 물품을 이전한 행위는 입원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 ☑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병원의 안전관리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병동 이전 등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개방병동에서 폐쇄병동과 같이 운영되는 중간병동으로 이전되었다. 개방병동에서 폐쇄병동으로의 이동은 환자에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행동제한 및 격리·강박 등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통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환자의 개인 사물이나 개인 사물의 처리는 환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 ☑ 진정인의 병동 이전과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진정병원의 수간호사가 병동 이전과 관련하여 사전에 진정인과 논의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정인이 병동 이전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병동을 이전한 행위는 진정인이 치료환경에 대해 환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 ☑ 또한, 타 환자와의 마찰 등을 우려하여 진정인이 귀원하기 전 2병동의 입원실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진정인의 개인 사물을 수간호사가 정리하여 3층 병동으로 옮긴 행위의 경우, 정황상 악의적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병실의 개인사물함은 **환자의 속옷, 편지나 일기 등 사적인 용품을 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 사람들의 정서상 사물함 사용자의 부재 시 열어보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영역으로, 수간호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사물함을 직접 열고 그 안의 물품을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할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VI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1. 보호자 요구에 의한 통신 제한 ————— 38
2. 공중전화 긴급버튼 차단 ————— 39
3. 휴대전화의 일률적 제한 ————— 41
4. 면회 및 외부물품 제한 ————— 43

보호자 요구에 의한 통신 제한

정신병원 환자 전화 및 면회 제한 등(18진정0350500)(2018. 6. 11. 결정)

진정요지 진정인 등 피해자의 동생들이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보호자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면회가 거절되었고, 피해자는 입원 이후 통신까지 차단되었다.

피진정인 주장 보호자들이 입원 초기부터 보호자 이외에는 면회를 허용하지 말 것을 간절히 요청하여 피해자의 형제들이 면회를 왔지만 모두 불허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통신제한은 보호자의 요청과 피진정인의 판단에 따라 통신제한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통신제한 기간 중 의료진의 눈을 피해 다른 환자의 공중전화카드를 빌려 가족에게 입원에 항의하는 전화를 하다 발각되어 통신제한을 연장하게 되었다. 이후 통신제한을 해제하였는데 피해자가 보호자에게 너무 많은 전화를 하고 퇴원시켜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며 보호자가 요청하여 피해자에 대해 다시 통신제한을 하였다.

판단 요지 치료 목적이 아닌 보호자의 요구와 징벌목적으로 전화사용을 제한하고, 제한사유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 등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8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 ☑️ 정신보건시설에서 통신 및 면회제한과 같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조치에 보호자의 요청 여부가 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 20××. 1. 1. 18:00~1. 11. 18:00 실시된 1차 전화제한의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실시된 기록이 확인되므로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 그런데 20××. 1. 11. 13:45~2. 11. 21:00 실시된 2차 전화제한의 경우 ‘보호자 협박’이라는 사유로 실시되었는데, **의학적 판단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유 및 상황에 대한 기재가 없고, 단지 ‘보호자 협박’을 이유로 30여일에 걸친 전화제한을 실시한 것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정당한 통신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진정인이 “2차 전화제한은 1차 전화제한 기간 중 몰래 다른 환자의 공중전화카드를 사용하다 발각된 것에 대한 벌칙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보면, 치료목적이 아닌 징벌적 목적으로 통신제한이 실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 ☑️ 또한, 피진정인은 보호자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원기간 중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해 면회를 제한하였는데, 보호자의 요청이 입원환자의 행동을 제한할 의학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20××. 1. 1. 18:00~1. 11. 18:00의 면회제한 기록 이외에는 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 역시 의학적인 판단과는 무관하게 부당하게 피해자의 행동을 제한함과 동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록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중전화 긴급버튼 차단

정신병원의 부당한 입원, 격리, 강박 및 긴급통화 차단 등
(19진정0336100·19진정0341400·19진정0428000(병합))(2020. 6. 12. 결정)

진정요지 병동 내 공중전화기에 긴급통화 버튼 사용이 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돈이 없으면 연락을 취할 수 없다.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병원 대부분의 환자들은 전화카드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외부와 연락을 하고 있고, 전화카드 충전은 주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돈이 없어서 연락을 할 수 없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진정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확인이 어려우나 위험한 상황(정신과적 응급상황이나 화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치료진에게 먼저 알리고 대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112, 119에 잦은 신고로 경찰, 119가 출동하는 등 허위신고가 다수 발생하여,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버튼 사용을 중지시켰다.

판단 요지 공중전화의 긴급버튼을 차단함으로써 모든 입원환자들이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와 수신자부담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와 안전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 ☑ 112와 119와 같은 긴급통신용 특수번호 서비스는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人命)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러한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를 이 사건 병원의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피진정인이 거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 ☑ 또한 의료적 조치로 입원환자들의 전화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전화제한이 필요한 환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며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버튼을 차단함**으로써 모든 입원환자들이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와 수신자부담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전화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 ☑ 환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112, 119 등에 허위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보여 긴급통화 버튼 차단은 피진정병원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한 행위라 보기 어렵고, 위에서 언급한 기존 결정례와 동일한 근거에서 전화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일괄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 모든 국민은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생명과 신체의 안전권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긴급통화 버튼 차단은 병동 긴급 상황 발생 시 금전문제 등으로 일시적 전화카드가 없는 환자를 포함하여 입원 환자들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초래할 수도 있다.

휴대전화의 일률적 제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등(22진정0199300)(2022. 6. 22. 결정)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비롯한 모든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괄 제한하고 있다.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병원은 폐쇄병동에 입원한 모든 환자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이는 통화 뿐 아니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인터넷 파일 전송, 녹음 및 녹취가 가능한 전자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써, 내부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다. 병동 내 공중전화를 통한 자유로운 외부통화가 허용되고, 서신 교환 역시 사전검열 없이 가능하므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별도의 의사 지시나 기록은 하지 않았다.

판단 요지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며,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고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7조 및 제18조 사생활의 자유, 알권리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 나아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 ☑ 휴대전화의 기능이 통화의 수단을 넘어서 일상생활 전반에 밀접히 연관됨에 따라 휴대전화의 사용과 관련된 기본권의 개념도 함께 확대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컴퓨터 등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고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자유, 알권리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 나아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기본권으로서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치료 목적의 의료기록 기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휴대전화를 일반 소지품으로 간주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폐쇄병동 입원환자에게 일괄 제한하였고, 그 사유 및 내용을 의료기록에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의 치료목적의 통신제한 사유 및 제30조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 ☑ 「헌법」 제1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그러한 자유는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 2011년 대법원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공개의 염려 없이 사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기본권”(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이라고 판시하였고, 이는 통신의 자유가 통신의 비밀 보호를 핵심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 그런데 피진정인은 병동 내 유일한 외부통신 수단인 공중전화를 다수가 이용하는 복도에 설치하여 통화내용이 그 복도를 오가는 타인에게 공개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입원환자의 통신의 비밀은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 것이 「헌법」 제18조에 따른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 ☑ 피진정병원 폐쇄병동에는 증상과 병식이 다양한 환자들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할 경우 타인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녹음·녹화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개연성에 근거하여, 환자의 상태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유사 결정례

2016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 따른 휴대폰 사용 제한 관행 개선권고 (2016. 8. 29.결정)

면회 및 외부물품 제한

정신병원에서의 외부물품 지급 및 면회제한 등(18진정0403700, 0407800(병합))
(2019. 12. 4. 결정)

진정요지 간호사를 통해 택배가 도착했다고 들었으나 한 번도 물건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종사촌, 8촌 언니, 고모의 며느리가 면회를 온 적이 있지만 병원에서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입원 당시 보호자로 등록된 직계가족 혹은 보호자가 직접 들고 온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해 가족을 통해 외부 물품이 반입되더라도 위해도구의 기준을 두고 선별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치료진이 인정한 보호자만 면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입원 오리엔테이션 시 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입원 당시 진정인이 작성한 보호자 명단은 없었다. 그리고 보호자 명단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는 사전에 주치의에게 면회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판단 요지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면회 불가”라는 사유로 행정입원환자에게 지인들의 만남과 물품 전달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입원환자의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 행위이다.

- ☑ 피진정인은 모든 환자들의 외부 물품 반입은 입원 당시 보호자로 등록된 직계가족 또는 보호자가 직접 들고 온 물건이 아니면 환자의 안전을 위해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이 없는 환자 등 개별 환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제한으로, 행정 편의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은 환자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물품인지 판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외부 물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건강상(고혈압, 고지혈증) 이유로 소포 반입을 불허하였다면 치료를 목적으로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진정인에게 반입하지 않은 소포의 내용물들은 피진정병원이 정한 ‘위해 도구 및 반입금지 목록’에 포함된 물품이 아닌 점, 외부 접촉이 제한되어 있는 입원환자에게는 외부로부터의 연락이나 물품은 활력을 주는 요소인데 진정인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환자로 병원 규칙에 따르면 외부 물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 등에서, 가족이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보낸 외부물품의 일률적 금지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 ☑ 따라서, 찾아올 가족이 없는 행정입원 환자인 진정인에게 물품을 보낸 사람이 가족 및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부 물품 전달을 전면 제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물품 반입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병동규칙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그 지인들과의 면회를 제한하였다. 진정인과 같이 보호자 명단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주치의 면회 가능여부 확인을 통해 면회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는 하였으나, 가족 외의 모든 지인들의 면회 요청에 관해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면회 불가”라는 사유로 진정인과 지인들의 만남을 전면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은 병원 생활 중 공공기관 직원 외에 지인들과의 접촉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설령 진정인을 위한 의료적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회를 제한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보호자가 없는 행정입원환자에게 과도하게 면회를 제한한 행위로, 이는 입원환자들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 및 제18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VII

인격권 침해

1. 비위생적 · 비인격적 격리실 환경 ————— 46
2. 격리실 내 휴대용(간이) 변기 ————— 48
3. 격리실 내 기저귀 착용 ————— 49

비위생적·비인격적 격리실 환경

정신병원의 보호실 환경으로 인한 인권침해(19진정0466800, 0466801 병합)(2020. 4. 20. 결정)

진정요지 보호실에 좌변기가 침대와 같은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비위생적 환경 속에서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았다.

피진정인 주장 보호실에 좌변기가 설치되어 환자로서는 비위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환자들이 용변을 볼 때마다 일반병실에 있는 화장실로 계속 데리고 갈 수 없는 실정이다. 본원에서는 현재 시설 여건 하에서 최대한 청결한 보호실을 만들기 위하여 매시간 또는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다. 참고로 보호실에 변기가 있는 병원도 있고, 없는 병원도 있는 실정이다. 보호실에 입실 시 바로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워놓거나 소변통이나 이동형 변기를 넣어두어 생리현상을 해결하도록 하는 병원도 많이 있다.

판단 요지 침대와 변기를 한 공간에 두거나 차폐시설이나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생활 모두가 CCTV에 상시 노출되거나 출입문을 통하여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보호실의 구조는 인간으로서 기본적 품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이다.

- ☑ 피진정병원의 보호실의 경우, 침대와 변기를 동일한 공간에 차폐시설이나 환기시설 없이 설치하고 있어 위생적이라 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신체 배설물을 처리하는 장소로서 용변을 보는 소리, 역겨운 냄새, 신체부위 등이 노출되는 장소이므로, 통풍 및 환기 시설을 갖추고 차폐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야 위생적인 환경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보호실은 잠금시설이 보호실 밖에만 설치되어 있어 관계인들이 아무 때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비록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CCTV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출입문을 통하여 언제든지 보호실 안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보호실에서 생활하는 진정인이 수면, 식사나 용변 처리 등 일상생활에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호실내에 차폐시설 없이 변기와 침대를 함께 설치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처사에 해당하고,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 다만, 현재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피진정인과 같은 법인 또는 개인 설립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보호실 시설 규모 및 설비에 대한 공통기준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신의료기관 마다 재정 형편에 따라 보호실에 차폐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변기를 설치하지 않은 병원들, 차폐시설 없이 좌변기를 설치한 병원들 그리고 보호실 안에 화장실을 두고 차폐시설까지 설치한 병원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보호실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조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략)
- ☑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보호실 내부에 차폐시설 없이 설치된 변기로 인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례 등 보호실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난 2016. 8. 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였던 내용에 추가하여, 보호실 규모, 벽면의 재질, 통풍 및 환기, 조명, 차폐시설이 있는 화장실 등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최소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격리실 내 휴대용(간이) 변기

격리실에서의 부당한 용변처리 등(20진정0839400)(2021. 5. 17. 결정)

진정요지 격리실에 있을 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자, 휴대용 변기를 사용하라고 했다. 밖이 내다보이는 곳에서 용변을 처리하게 하여 수치스러웠다.

피진정인 주장 환자들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병동 내 공용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격리실 내에서 이동식 변기로 용변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격리실 문에 있는 창에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판단 요지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이동식 변기에서 용변을 보게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 ☑ 통상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는 격리실에 있는 환자들이 용변 보기를 요청하는 경우, 내·외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거나 격리실 내 화장실이 없는 경우 가림막이 설치된 곳 또는 CCTV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피진정병원의 1번 격리실을 제외한 나머지 격리실의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관찰창의 가림막도 밖에 설치되어 있어 환자들의 신체 주요 부분이나 용변 보는 모습이 여과 없이 CCTV 송출 화면이나 격리실 관찰창을 통해 타인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인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격리실 내 기저귀 착용

격리·강박 시 부당한 기저귀 착용 등 (20진정0456100)(2020. 9. 1. 결정)

진정요지 본인의 동의 없이 기저귀를 채워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기저귀를 벗은 후에도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격리실에서 간이 소변통을 사용하게 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타해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격리·강박 시 불가피하게 기저귀를 착용시켰다. 일반적으로 격리·강박 후 환자의 화장실 사용 요청 시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며, 진정인도 같은 날 저녁에 사지강박을 해지하고 환자의 화장실 사용 요청이 있어서 보호사가 동행하여 다녀왔다.

판단 요지 격리실 내에서 가림막도 없이 환자에게 기저귀를 착용시키면서 의무기록에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은 행위는 입원환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행위이다.

- ☑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격리·강박 시 진정인에게 기저귀를 착용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이견은 없다. 피진정인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기저귀를 착용시켰고, 이에 대해 진정인에게 설명하였으며, 기저귀를 착용 시 CCTV 영상에 종이를 붙여 사생활을 보호한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는 피진정인 및 피진정병원 직원들의 진술일 뿐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진료기록은 전무하다.
- ☑ 기저귀 착용이 치료진의 의료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기저귀는 의식이 없고 심신이 미약하거나 거동할 수 없는 환자 등, 기저귀 사용이 불가피한 환자에게 착용시키는 것이지 거동이 가능하고 의식이 있는 진정인과 같은 환자에게 격리·강박 시 착용시키는 것은 치료진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 ☑ 또한, 진정인은 가림막도 없는 격리실 내에서 기저귀 착용 시 신체의 주요 부분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CCTV 영상에 녹화되었다. 그리고 격리실 내 환자를 관찰하기 위해 설치된 유리창을 통하여 진정인의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격리실 구조로 인해 진정인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며,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VIII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보장

1. 진정서 미발송 ————— 52
2. 진정서 분실 · 폐기 ————— 53
3. 진정서 및 진정함 관리 소홀 ————— 54

진정서 미발송

정신병원의 진정방해 등(17진정0029900, 17진정0036200(병합))
(2018. 6. 11.결정)

진정요지 입원 후 2일 동안 격리실에 있으면서 당한 인권침해 내용을 적은 진정서 12개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에 넣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지 않고 아버지를 통해 진정인에게 돌려준 것은 부당하다.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의 아버지가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면담 시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음을 알렸고 아버지는 진정내용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혹시 진정인이 병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에 대해 아버지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아버지에게 진정서를 보여드렸으나 진정인의 아버지는 면담 후 반납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가진 채로 귀가하였다.

판단 요지 입원 중인 환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호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수용자의 진정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이다.

- ✓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시행령에서 진정권 보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즉각적인 진정서 송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수용시설의 특성상 수용자가 원할 때 신속하고 자유롭게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서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병원 내부의 단순 불만민원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짐작하여 진정서 송부를 지연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 ✓ 피진정인은 “혹시 진정인이 병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에 대해 아버지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진정서를 진정인의 보호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진정인은 진정서의 내용을 짐작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거나 보호자와의 타협을 통해 진정사건을 해결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진정서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호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수용자의 진정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진정서 분실·폐기

정신병원의 진정서 폐기로 인한 인권침해(19진정0707900)(2019. 12. 4. 결정)

진정요지 진정인은 정신병원에 자의입원하여 열흘 뒤 퇴원하였다. 진정인은 퇴원 이틀 전에 사회복지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회복지사는 이를 담당자인 피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열흘이나 지났어도 인권위에 진정서가 도착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주장 사회복지사로부터 진정인의 진정서를 전달받으나 진정인이 주치의와의 면담을 거친 뒤에 제출한 진정서의 폐기를 요청한 적이 있었기에 면담 결과를 확인하고 진정서 발송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였다. 며칠 후 출근해서 면담 결과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미 퇴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정인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서 임의로 진정서를 폐기하였다.

판단 요지 진정인이 퇴원하였으므로 진정취지가 해소되었다고 오해하여 임의로 진정서를 폐기한 행위는 진정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이다.

- ☑ 시설수용자가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거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은 진정서 발송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한 것이다. 진정서를 작성·제출한 시설수용자가 진정서에 대한 철회나 폐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한, 그 진정서는 위원회로 발송되어야 마땅하다.
- ☑ 그런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발송 여부 의견을 밝히지 않고 퇴원하였다고 해서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고 임의 폐기하였는바, 이는 진정인 등 입원환자의 자유로운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진정서 및 진정함 관리 소홀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거부 및 진정서 발송 지연(20진정0073200)
(2020. 5. 14. 결정)

진정요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써서 진정함에 넣었는데, 위원회에 진정서가 한 달 가량이나 지연되어 접수되었다.

피진정인 주장 각 병동에 비치된 위원회 진정함을 매일 수거할 수 없어서 수거하는 일자를 정해놓고 수거하여 발송이 늦어졌다. 추후에는 빠른 시간 내 수거하여 발송하도록 시정하겠다.

판단 요지 위원회 진정함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는 진정인이 진정을 통해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연하게 한 행위이다.

- ✓ 위원회 진정함은 관리 책임자를 두어 매일 일정시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발송하도록 안내되고 있고, 매년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인권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되고 있다.
- ✓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진정서 작성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행위에 이른 것은 아니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진정서 작성일에 따르면 진정서 발송을 13일 정도 지연시킨 것이지만, 피진정인이 위원회 진정함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진정인이 진정을 통해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연하게 한 행위이기에, 피진정인의 시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만으로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기 어렵다.
- ✓ 따라서, 피진정인은 위원회 진정함 관리에 대해 관리자 지정과 관리대장 작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인 쇄| 2022년 12월

|발 행| 2022년 12월

|발행인| 송 두 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장애차별조사2과

|전 화| 02)2125-9985 |F A X| 02)2125-0925

|Homepage| www.humanrights.go.kr

|인쇄처| (주)두루행복한세상 (여성·장애인표준사업장)

|전 화| (070) 4659-0803 |F A X| (070) 7500-1146

ISBN 978-89-6114-953-2 93510

비매품

